

주차지원 규정

2014. 01. 01

(주)오픈에스앤에스

제1조 [목적]

본 규정은 업무상 필요한 임직원 차량의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차량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[용어의 정의]

- ① "무료주차"라 함은 주식회사 오픈에스앤에스(이하 "회사"라 함)에서 임대하고 있는 건물과 비례하여 무상으로 제공되는 주차공간의 사용을 말한다.
- ② "유료주차"라 함은 회사에서 임대하고 있는 건물과 비례하여 무상으로 제공되는 주차공간 이외에 추가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 유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③ "주차보조금"이라 함은 유료주차시 지불되는 금액에 대해 일정금액을 회사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 [적용범위]

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및 임직원의 자가용을 회사를 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.

제4조 [주차지원 대상자]

- ① 임원
- ② 부문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인원 중 품의를 거친 자

제5조 [주차공간 지급]

주차공간 지급은 경영진 및 임원순으로 무료주차공간 우선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공간이 부족 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유료주차공간으로 지급하며 주차보조금도 함께 지급한다.

제6조 [대상자 변경]

퇴사 및 기타사유로 인해 주차지원이 중단되었을 경우 무료주차공간 사용을 우선으로 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한다.

제7조 [주차보조금 지급기준]

- ① 주차보조금 지급은 부문장이 선정하여 매년 초 일괄 품의된 자에 한한다. 단, 중도 추가자는 별도의 품의를 거친다.
- ② 주차보조금은 월별로 지급됨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경영지원본부에 차량 등록증(1회) 및 지출결의서와 영수증(매월)을 통해 반드시 증빙을 하여야 한다.

제8조 [주차보조금 한도]

주차보조금은 매월 100,000원 한도내의 실비로 정산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
단, 임원의 경우 무료주차를 우선 제공하며 유료주차를 이용하게 될 경우 전액 실비로 정산한다.

부 칙

제1조 [시행일]

①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